

2017년산
하계 주요작물종자 생산 · 공급계획

2017. 3.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I . 사업개요	1
II . 종자 생산·공급 계획	5
III . 세부 사업 추진체계	13
1. 종자생산단계별 생산·공급 체계	15
2. 종자생산단계별 생산·공급량 결정	15
3. 종자생산 및 검사	17
4. 종자생산단계별 지역단위 합동진단	18
5. 종자(보급종) 구매 및 가격결정	19
6. 종자 신청·공급	20
7. 상위단계 종자보관 및 품질검정	21
8. 원원종 및 원종 활용	21
IV . 종자 공급계획	23
1. 작물별 공급계획(총괄)	25
2. 도별 공급계획	26
3. 작물별 공급계획	35
4. 부족종자 사용계획	67
5. 벼·콩 보급종 통합 채종계획	69
V . 단계별 사업담당 및 종자생산 기준	71
VI . 작물별 세부 추진요령	75
VII . 작물별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요령	93
VIII . 보고사항	99



I

사 업 개 요

I 사업개요

□ 목 적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종자 생산 · 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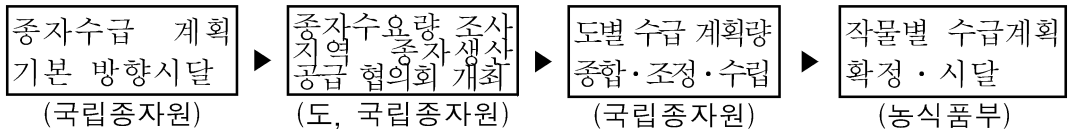
*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등재 품종 등의 종자생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고자 할 때는 농촌진흥청장, 특별 · 광역시장 · 도지사, 시장 · 군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단체,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민 등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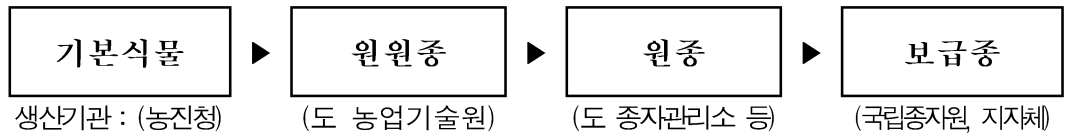
□ 대상작물

- 원원종(9작물) : 벼, 콩, 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원종(10작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보급종(3작물) : 벼, 콩, 팥

□ 종자 수급계획 결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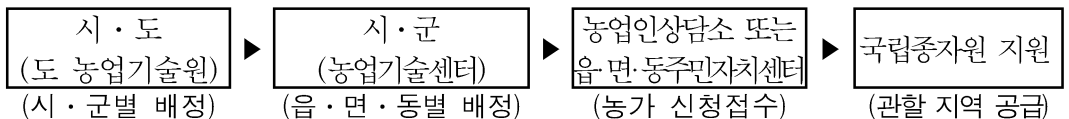


□ 채종단계별 종자 생산체계



* 종자갱신에 필요한 소요 종자는 일시에 대량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종자를 증식하여 최종 단계인 보급종을 수요 농가에 공급

□ 보급종 신청 · 공급 절차(수확 후 농가신청 → 공급)



* 읍 · 면 · 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국립종자원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량 입력



Ⅱ

종자 생산·공급 계획

II 종자 생산·공급 계획

1. 생산·공급계획량 : 원원종 78톤, 원종 1,281, 보급종 26,637

〈 종자 생산·공급 계획량(총괄) 〉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생 산 계획량	면 적	종자량	생 산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a	kg	kg	a	kg	kg	ha	kg	톤
계	1,302.4	6,166.77	77,723.2	21,606	71,399.8	1,281,352	5,862	312,305	26,636.5
벼	260.7	39.12	3,910	8,303	3,915.00	373,650	4,717	244,487	25,025
콩	509.0	203.60	5,090	7,570	4,216.00	90,842	1,144	67,768	1,610
옥수수	-	-	-	250	50.00	1,250	-	-	-
감자	450.0	5,850.00	67,500	4,470	62,580.00	804,600	-	-	-
팥	24.3	7.29	146	235	94.00	1,645	1	50	1.5
녹두	15.0	2.25	75	95	14.00	475	-	-	-
고구마	6.0	45.00	780	45	337.5	5,850	-	-	-
참깨	15.3	0.77	30.5	340	17.05	1,035	-	-	-
들깨	4.1	0.14	10.7	139	4.25	415	-	-	-
땅콩	18.0	18.60	181.0	159	172.00	1,590	-	-	-

* 보급종에는 시범사업 공급물량(총체벼 25톤, 아라리팥 1.5톤)이 포함됨

2. 채종 단계별 생산·공급 계획

< 중점 추진 방향 >

- (벼) 농업인의 수요와 식량산업 정책방향을 고려, 다수확 품종위주에서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공급기조 전환
 - '18년 보급종 공급량은 금년보다 4.9천톤이 많은 25천톤으로 하고, 다수확 품종은 공급 축소
 - 보급종 공급계획 : ('17년) 20.1천 톤 → ('18) 25.0(전년대비 4.9천톤 증)
 - * 다수확 품종(운광 등 5품종) : ('16년산) 전체공급량의 34% → ('17) 32%(8,000톤)
 - 수확기 품종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력 공급량(1,590톤) 확보
 - * 도별 공급계획량 중 일정물량은 품종을 정하지 않고 탄력 공급량 확보
 - 원원종·원종은 신규품종 수요 및 기상재해 등에 대비 적정 품종 생산
 - * 원원종 : 34품종 391톤(전년 38품종 385톤), 원종 : 28품종 373.7톤(전년 33품종 381.0톤)
- (콩) 논 타작물 재배확대 등 정책방향, 국산콩 자급률 향상 등을 위해 보급종 확대 공급
 - 논 타작물 재배확대 추진 및 전년도 콩의 수확량 감소(전년대비 11.0%)로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재배면적은 증가 예상
 - 보급종 공급계획 : ('17년) 1,328톤 → ('18) 1,610(전년대비 228톤 증)
 - 원원종·원종은 기상재해 등에 취약품종 생산 중단, 신규품종 수요대비
 - * 원원종 : 18품종 5.09톤(전년 21품종 4.95톤), 원종 : 13품종 90.8톤(전년 14품종 90.0톤)
- (시범사업) 논 타작물확대 및 타작물의 수급 불안 완화를 위한 생산 공급
 - 쌀 적정생산 및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에 대비 총체며 보급종 생산·공급(25톤)
 - 국산팥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보급종 생산·공급(1.5톤)
- (감자) 원원종·원종은 전년도 수준에서 생산·공급
 - 원원종 67.5톤, 원종 804.6톤(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 공급)
- (기타 팥 등 7개 작물) 지역별 수요량의 원원종·원종 생산·공급

가. 원원종

- 신품종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품종을 생산
 - (벼) 신품종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품종(34품종)을 생산하되, 신구품종 중 국가품종목록 미등재품종 및 다수확품종은 제외
 - (콩)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논콩 재배에 대비 수량성이 좋은 품종을 도입하는 등 농가의 다양한 선호에 대응하기 위한 품종(18품종) 생산

나. 원 종

- 도별 주력품종 등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종자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생산
 - (공통) 생산계획은 생산기준량을 적용, 생산량 전량을 종자검사 실시하여 보급종 생산에 활용
 - (벼) 보급종(25.0천 톤) 공급을 위해서는 245톤의 원종이 필요하나, 품종추가 수요대비, 원종장 생산포장 여건, 원종생산에 필요한 예산 등을 감안하여 소요량의 1.5배이상 생산(373톤)
 - (콩) 보급종(16.1백 톤) 공급을 위해서는 68톤의 원종이 필요하나, 원종장 생산포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1.3배이상 생산(91톤)

다. 보급종

- (벼) '17년보다 4.9천톤이 증가한 25.0천톤으로 공급하되, 다수확 품종은 쌀 재고량 증가, 소비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공급 축소
 - 기상재해에 취약한 품종(일미, 수광, 황금누리)은 공급을 중단하고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신규로 공급(3품종, 친들, 호평, 해품)
 - 공급계획 : ('17년) 20.1천톤 → ('18) 25.0(전년대비 4.9천톤 증)
 - 다수확품종 : ('17년) 6,495톤(계획대비 34%) → ('18) 8,000(32%)
 - * 다수확 품종 공급계획(전년대비) : ('16년) 42% → ('17) 34 → ('18) **32** → ('19 이후) 29% 이하

〈 도별·품종별 보급종 공급계획 〉

(단위 : 톤)

구 분	'17년산 공급계획									'16년산 공급계획			증△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 계 (A)	계획 (B)	조정 (C)	(A-B)	(A-C)	
계(24품종)	3,100	1,400	1,250	4,525	3,900	4,750	3,550	2,550	25,025	25,300	25,300	△275	△275	
삼 광	270	200	400	2,550	-	-	500	-	3,920	2,330	2,643	1,590	1,277	
새 누 리	-	-	-	500	750	1,400	350	800	3,800	5,485	5,615	△1,685	△1,815	
신 동 진	-	-	-	-	2,100	850	-	-	2,950	2,430	2,761	520	189	
추 청	2,015	70	580	100	-	-	-	160	2,925	2,970	3,075	△45	△150	
새 일 미	-	-	-	510	-	1,000	-	680	2,190	1,620	1,805	570	385	
일 품	-	-	-	-	-	-	2,065	-	2,065	1,900	2,050	165	15	
운 광	-	130	20	80	250	150	150	260	1,040	1,255	1,305	△215	△265	
오 대	35	810	70	-	-	-	-	-	915	910	930	5	△15	
동 진 찰	-	-	-	50	400	300	-	30	780	840	930	△60	△150	
미 품	-	-	-	-	-	540	-	-	540	280	294	260	246	
영호진미	-	-	-	-	-	130	-	380	510	270	310	240	200	
친 들	-	-	-	400	-	-	-	-	400	-	-	400	400	
고시하카리	380	-	-	10	-	-	-	-	390	330	350	60	40	
대 안	225	80	-	-	-	-	-	-	305	390	395	△85	△90	
해 품	-	-	-	-	-	-	140	60	200	-	-	200	200	
오 른	-	100	-	-	-	-	-	-	100	80	80	20	20	
조 평	-	-	-	-	100	-	-	-	100	205	213	△105	△113	
맛 드 림	70	-	-	-	-	-	-	-	70	100	104	△30	△34	
백 옥 찰	-	-	-	-	-	-	65	-	65	90	100	△25	△35	
대 보	-	-	40	-	-	-	-	-	40	885	945	△845	△905	
하이아미	-	-	40	-	-	-	-	-	40	170	201	△130	△161	
화 선 찰	35	-	-	-	-	-	-	-	35	30	32	5	3	
호 평	-	-	-	-	-	30	-	-	30	-	-	30	30	
삼 덕	-	-	-	-	-	-	-	-	-	160	175	△160	△175	
수 광	-	-	-	-	-	-	-	-	-	100	100	△100	△100	
일 미	-	-	-	-	-	-	-	-	-	380	487	△380	△487	
황금누리	-	-	-	-	-	-	-	-	-	400	400	△400	△400	
영우(총체)	-	-	-	25	-	-	-	-	25	-	-	25	25	
탄력공급	70	10	100	300	300	350	280	180	1,590	1,690	-	△100	1,590	

○ **(콩)** 논 타작물 재배확대 등 정부정책, '16년산 콩의 수확량 감소 (전년대비 11% 감) 등에 따른 가격상승 등으로 재배증가가 예상되어 '17년보다 2.9백톤 확대한 1,610톤 공급

- 기상이변에 대응 통합채종을 운영하는 등 전국단위 보급종 생산체계 구축
 - * 통합채종 : 장류콩 130톤(중부 내륙지역에서 생산하여 남부지방에 공급),
나물콩 50톤(전남·북에서 생산하여 제주에 공급)
- 보급종 공급계획 : ('17년) 13.2백톤 → ('18) 16.1 (전년대비 2.9 증)

〈 도별·품종별 보급종 공급계획 〉

(단위 : 톤)

구 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1,610	150	190	220	180	160	240	290	80	100
일반콩 (5)	소 계	1,420	150	190	220	180	145	165	290	80	-
	대 원	1,186.6	145.6	140	220	160	145	50	290	36	-
	태 광	184	-	25	-	-	-	115	-	44	-
	대 풍	25	-	25	-	-	-	-	-	-	-
	선 유	20	-	-	-	20	-	-	-	-	-
	연 풍	4.4	4.4	-	-	-	-	-	-	-	-
나물콩 (1)	소 계	190	-	-	-	-	15	75	-	-	100
	풍산나물	190	-	-	-	-	15	75	-	-	100

○ **(총채벌레, 팥)** 논 타작물 확대 및 밭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쌀 적정생산 및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총채벌레 생산·공급(25톤)
- 다양한 작부체계 및 기계화 적응성이 높아 수요가 예상되는 팥 보급종 생산·공급(1.5톤)

○ **(감자, 옥수수)** '12년부터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은 제외하되, 원활한 보급종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원종·원종은 공급계획에 포함

- (감 자) 전년도와 동일한 물량(원원종 67.5톤, 원종 804.6) 공급
- (옥수수)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종 공급(원종 1.3톤)



Ⅲ

세부 사업 추진체계

Ⅲ 세부 사업 추진체계

1. 종자생산단계별 생산·공급 체계

- 기본식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쌀,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등
- 품종육성기관에서 육성한 원래의 종자를 말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생산
- 원원종(9작물) : 벼, 콩, 감자, 쌀,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품종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로
각도 농업기술원 및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
- 원종(10작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쌀,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로 각도 원종생산기관 및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생산
* 신속한 확대공급이 필요한 품종의 경우 국립종자원에서 상위단계종자 생산
- 보급종(3작물) : 벼, 콩, 쌀
- 원원종 또는 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되는 종자를
말하며 국립종자원장 또는 지자체(경기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에서 생산·공급 담당
* 감자 보급종은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에서 자율적으로 생산·공급

2. 종자생산단계별 생산·공급량 결정

가. 결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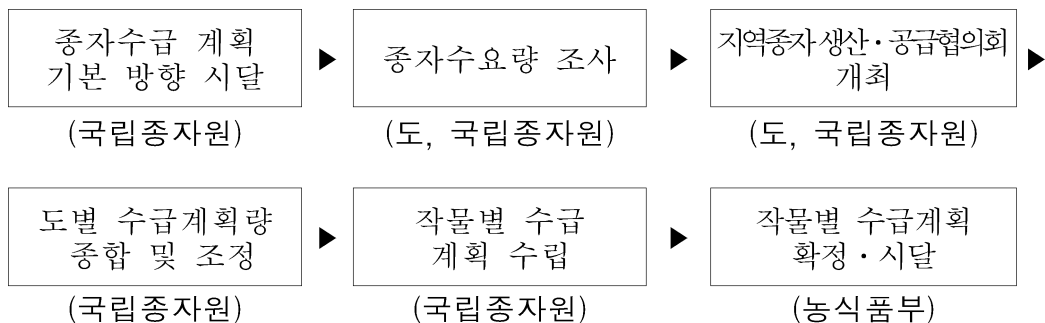
- 지역종자생산·공급협의회에서 단계별 생산 품종 및 생산·공급량 협의
- 지역종자생산·공급협의회구성 : 국립종자원(지자체 공급기관 포함),
도 농업기술원(시·군 기술센터), 대량 종자수요처(브랜드경영체,
RPC, 전업농 등), 농진청(시험연구기관) 등

- 원원종·원종·보급종의 생산·공급 협의 : 국립종자원 또는
도 농업기술원(도별 여건에 따라 조정)
- * 특별시·광역시 소요종자는 국립종자원 지원의 보급종 공급 관할 도에 포함
- 지역종자생산·공급협의회 운영 : 2회(1~2월, 벼 수확기 이전)
- 벼 품종별 선호도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신규품종 특성 관찰
등을 위해 수확기 이전에 1회 추가 운영

○ 도별 보급종 품종 및 물량 결정

- 지역종자생산·공급협의회 협의결과를 기준으로 품종별 재배면적,
농가 선호도, 작물별 원종생산량(확보량), 재해 및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 채종가능면적, 정선능력, 과거 종자신청·공급량, 금후 공급
가능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결정

나. 종자 공급계획 수립 절차



다. 종자 생산·공급량 결정방향

○ 원원종·원종

- 신품종 증식, 농업인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보급종 생산가능품종
중심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채종기준량에 준하여 목표량 책임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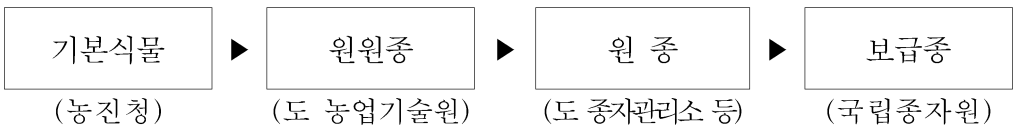
○ 보급종

- 정부 공공비축 매입 품종, 고품질 품종 등 농업인 선호품종을 중점 생산
- 공급계획량 달성을 위해 채종기준량, 품종별 감모율 등을 감안하여 보급종 생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계획 수립 추진
- * 채종기준량은 국립종자원 및 지자체 종자생산기관에서 자체조정 가능

3. 종자 생산 및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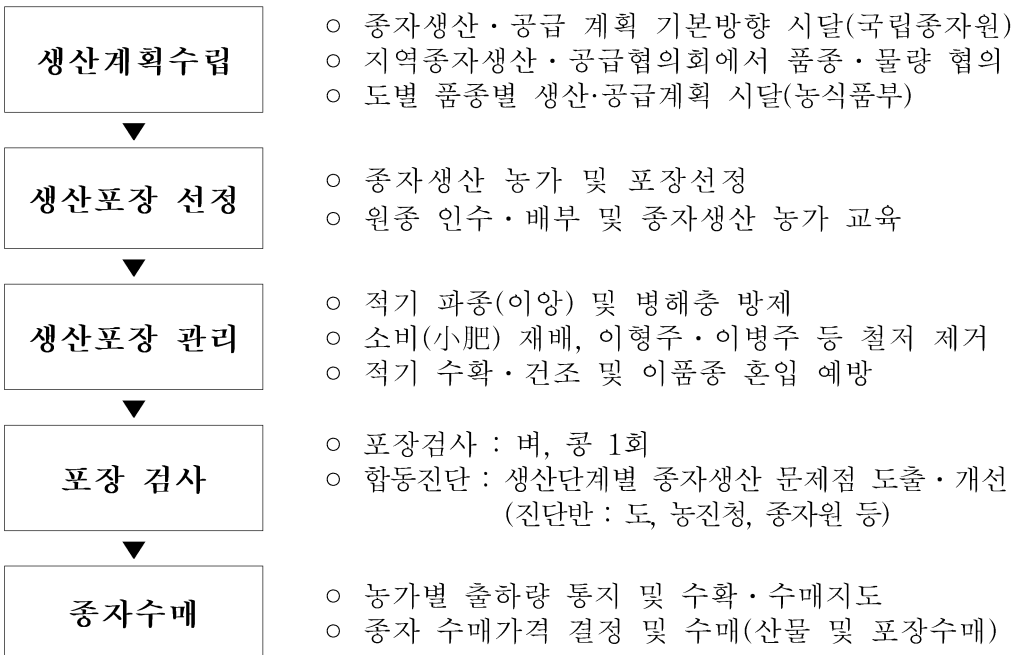
가. 종자생산 절차

○ 종자생산 단계



* 종자갱신에 필요한 소요종자는 일시에 대량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로 종자를 증식하여 최종단계인 보급종을 수요농가에 공급

○ 보급종 생산 절차



나. 종자생산 및 검사요령

○ 종자생산 관리기준

- 고품질 종자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종자생산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 준용
- 정부 보급종은 국립종자원 관련 예규에 따라 포장관리 및 우량종자 수매 추진
- 자연재해 등으로 수매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원

정부 보급종 채종과정에서 포장검사 합격 후 채종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종자를 수매하지 못할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채종계약량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세부적인 사항은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국립종자원 예규) 참고

○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방법

- 관련규정 : 종자산업법 제28조(포장검사), 제30조(종자검사 등)
- 검사기준 : 종자관리요강에 규정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기준』
- 검사방법 : 종자검사 요령(국립종자원 고시)
- 검사기관 : 국립종자원
- 검사대상 : 원원종·원종·보급종 및 동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하는 품종목록등재대상 작물의 보급종(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4. 종자생산단계별 지역단위 합동진단

○ 추진목적

- 상위단계(원원종·원종) 종자의 품종별 재배 특성을 숙지하고 품종의 균일성 및 안정성, 생육상황, 이품종 발생, 병해충 저항성, 키다리병 등 특정병 발생 여부 등 사전 확인 점검

○ 합동진단 주관 : 농진청(도, 종자원, 지자체 공급기관)

○ 관찰시기 및 방법 : 작물별 생육 최성기

* 포장관찰 시기 및 방법 등은 해당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추진

5. 종자(보급종) 수매 및 가격결정

가. 수매계획량

- 작물별 보급종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 국립종자원장(지자체 포함)이 결정한 물량

나. 수매·공급가격

(1) 수매·공급 가격결정 : 국립종자원장이 결정

(2) 수매가격 결정기준

- **벼** : 당해년도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특등)에 20%를 가산한 금액(기준가격)
* 찰벼 품종은 채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등가격에 생산장려금 25% 가산
- **콩·팥** : 수확기(10.10~11.10. 1개월) 양곡시장 유통가격(용도별 1등급), 시중유통가격 또는 정부약정 수매 1등급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생산장려금(15~20% 수준) 가산

생산장려금 지급 사유

- ◇ 채종재배는 일반재배보다 모든 작업을 정밀하게 하며 이품종, 이형주, 잡초제거 등을 수차례 실시하고 병충해 방제횟수 2~3회 증가 등 철저한 포장관리로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비 추가 소요
- ◇ 종자 충실도 향상을 위한 다수확 재배 지양, 혼종방지를 위한 새 포대 사용,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정부 보급종 생산 참여 의욕 고취

(3) 공급가격 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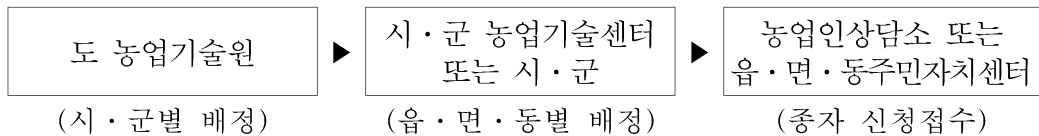
- (기본방향) 정선 및 종자소독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 투입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 (벼) 종자생산 투입원가의 95% 수준으로 결정
- (콩) 종자생산 투입원가의 70% 수준으로 결정
- (총채벌레, 팥) 보급종 공급 관련 정부정책 및 시중 유통가격을 감안하여 결정

6. 종자 신청·공급

가. 종자(보급종) 신청

- 신청 접수기관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사무소
- 보급종 신청·공급 방법
 -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따라 추진

나. 종자신청·접수 절차



다. 종자(보급종) 공급

(1) 공급량 공고

○ 공고방법

- 시도별, 작물별, 품종별 공급계획량 범위 내에서 「종자관리 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고

* 작물별 공고 시한 : 벼(우선신청·공급 11.1. 일반 11.20), 콩(1.31)

○ 공고기관 : 국립종자원 지원장, 지방자치단체 종자공급기관장

(2) 공급체계

- (주관기관) 해당도 생산·공급 원칙에 따라 국립종자원과 지자체 종자공급기관(경기, 제주)에서 해당 관할 지역에 생산·공급

○ (공급방향) 벼 보급종은 우수 경영체 중심으로 우선공급 확대

-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정부지원 RPC」, 「쌀 품종명 관리마크 표시업체」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위의 업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에 정부 벼 보급종을 우선 신청 받아 공급

* 다만 RPC, 육묘장, 쌀 전업농 등 대량 수요처 공급량은 도 농업기술원, 관할 국립종자원(경기 포함)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와 협의하여 조정

7. 상위단계 종자보관 및 품질검정

- 원원종, 원종은 보급종 생산이 완료될 때까지 품종별 종합시료를 채취하여 자체 보관·관리
 - 채종단계별 종자 시료 보관 기간 : 원원종 3년, 원종 2년
 - * 기본식물·원원종·원종은 필요시 인수기관에서 순도에 대한 유전자(DNA)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5년)
- 국립종자원은 순도, 발아율, 건전도 등 품질 좋은 상위단계 종자 확보를 위해 자체 품질검정을 실시하고 생산기관과의 협력 강화
- 찰벼 등 특수 기능성 품종 등에 대해서는 적정 품질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차 하급 종자생산기관에 종자를 인도하여야 하며, 인수기관에서도 자체 품질검정을 실시하여 이상여부를 사전에 확인

8. 원원종 및 원종 활용

- 국고보조금으로 생산한 원원종·원종은 생산전량(불합격품 포함)을 차 하급 종자생산기관으로 무상 인계하고, 종자 수송은 수요기관에서 담당
 - 벼·콩은 원종과 원원종 사용 잔량까지 국립종자원(지자체 공급기관 포함)에서 관할 지역 물량을 일괄 인수하여 활용
 - * 단, 잔량이 10kg 이하 원원종은 시험연구 등 도 자체활용계획이 있을 경우 인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종단계별로 안정적인 종자확보를 위해 소요종자가 부족할 경우 반드시 순도검정 등 품질에 대해 사전 확인하여 재증식 활용
- 지도기관의 품종비교 전시포는 최근에 육성된 국가품종목록 등재품종 위주로 설치하여 농업인 등에게 비교·홍보



IV

종자 공급계획

IV

종자 공급계획

1. 작물별 공급 계획(총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1,302.4	6,166.77	77,723.2	21,606	71,399.80	1,281,352	5,862.0	312,305	26,636.5
벼	260.7	39.12	3,910.0	8,303	3,915.00	373,650	4,717.0	244,487	25,025
콩	509.0	203.60	5,090.0	7,570	4,216.00	90,842	1,144.0	67,768	1,610
옥수수				250	50.00	1,250			
감자	450.0	5,850.00	67,500.0	4,470	62,580.00	804,600			
팥	24.3	7.29	146.0	235	94.00	1,645	1.0	50	1.5
녹두	15.0	2.25	75.0	95	14.00	475			
고구마	6.0	45.00	780.0	45	337.50	5,850			
참깨	15.3	0.77	30.5	340	17.05	1,035			
들깨	4.1	0.14	10.7	139	4.25	415			
땅콩	18.0	18.60	181.0	159	172.00	1,590			

* 도별 보급종 생산면적, 종자량은 국립종자원 지원별 통합 재종계획을 감안하여 별도 표기하지 않음

2. 도별 공급 계획

○ 경기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벼	66.30	22.39	742	1,556	676.3	43,662			3,250
콩	24.00	3.62	360	795.0	320.0	35,775			3,100
목 수 수	30.00	12.00	300	556	278	6,672			150
감 자									
팔	3.30	0.99	20	50	20.0	350			
녹 두	1.00	0.15	5	35	5.0	175			
고 구 마									
참 깨	2.00	0.10	4	45	2.3	150			
들 깨	1.00	0.03	3	30	1.0	90			
땅 콩	5.00	5.50	50	45	50.0	450			

○ 강원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벼	534.50	5,876.72	68,430.5	6,310	63,351.3	844,190			1,592
콩	25.00	3.75	375.0	600	240.0	27,000			1,400
옥수수	50.00	20.00	500.0	900	450.0	10,800			190
감자				250	50	1,250			
팥	450.00	5,850.0	67,500.0	4,470	62,580.0	804,600			
녹두	7.00	2.10	42.0	50	20.0	350			1.5
고구마									
참깨	1.00	0.05	2.0	20	1.0	60			
들깨	0.50	0.02	1.5	10	0.3	30			
땅콩	1.00	0.80	10.0	10	10.0	100			

○ 충청북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47.0	16.26	508.7	1,254	677.7	31,030			1,470
벼	10.7	1.60	160.0	500	251.0	22,500			1,250
콩	33.0	13.20	330.0	684	410.0	8,210			220
옥 수 수									
감 자									
팥	1.0	0.30	6.0	10	4.0	70			
녹 두									
고 구 마									
참 개	0.3	0.02	0.5	10	0.5	30			
들 개	1.0	0.04	1.2	40	1.2	120			
땅 콩	1.0	1.10	11.0	10	11.0	100			

○ 충청남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계	a 102.0	kg 29.05	kg 1,255	a 2,593	kg 1,379.0	kg 90,300	ha	kg	톤 4,705
벼	47.0	7.05	705	1,793	899.0	80,700			4,525
콩	55.0	22.00	550	800	480.0	9,600			180
옥 수 수									
감 자									
팥									
녹 두									
고 구 마									
참 개									
들 개									
땅 콩									

○ 전라북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148.0	60.18	1,920.00	2,595	1,491.7	81,310			4,060
벼	48.0	7.20	720.00	1,480	745.0	66,600			3,900
콩	90.0	36.00	900.00	1,030	613.0	12,360			160
옥수수									
감자									
팥	3.0	0.90	18.00	30	12.0	210			
녹두	1.0	0.15	5.00						
고구마	2.0	15.00	260.00	15	112.5	1,950			
참깨	2.0	0.10	4.00	15	0.75	45			
들깨	1.0	0.03	3.00	15	0.45	45			
땅콩	1.0	0.80	10.00	10	8.0	100			

○ 전라남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계	a 142.0	kg 41.95	kg 1,552	a 2,060	kg 1,090.5	kg 57,340	ha	kg	톤 4,990
벼	44.0	6.60	660	1,000	500.0	45,000			4,750
콩	80.0	32.00	800	1,000	575.0	12,000			240
옥 수 수									
감 자									
팥	5.0	1.50	30	30	12.0	210			
녹 두	12.0	1.80	60	20	3.0	100			
고 구 마									
참 개	1.0	0.05	2	10	0.5	30			
들 개									
땅 콩									

○ 경상북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계	a 140.3	kg 48.76	kg 1,488	a 2,683	kg 1,159.0	kg 64,365	ha	kg	톤 3,840
벼	32.0	4.80	480	1,050	415.0	47,250			3,550
콩	90.0	36.00	900	1,300	660.0	15,600			290
옥 수 수									
감 자									
팥	5.0	1.50	30	25	10.0	175			
녹 두	1.0	0.15	5	20	3.0	100			
고 구 마									
참 개	6.0	0.30	12	200	10.0	600			
들 개	0.3	0.01	1	34	1.0	100			
땅 콩	6.0	6.00	60	54	60.0	540			

○ 경상남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91.3	59.06	1,517	2,255	1,424.3	65,555			2,630
벼	30.0	4.50	450	1,085	545.0	48,825			2,550
콩	50.0	20.00	500	1,000	600.0	12,000			80
옥 수 수									
감 자									
팥				40	16.0	280			
녹 두				20	3.0	100			
고 구 마	4.0	30.0	520	30	225	3,900			
참 깨	3.0	0.15	6	40	2.0	120			
들 깨	0.3	0.01	1	10	0.3	30			
땅 콩	4.0	4.40	40	30	33.0	300			

○ 제주도

작물명	원원종			원종			보급종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면 적	종자량	공 급 계획량
계	a 31.0	kg 12.4	kg 310	a 300.0	kg 150.0	kg 3,600	ha	kg	톤 100
벼									
콩	31.0	12.4	310	300.0	150.0	3,600			100
옥 수 수									
감 자									
팥									
녹 두									
고 구 마									
참 개									
들 개									
땅 콩									

3. 작물별 공급 계획

가. 벼

○ 보급종 공급계획(도별)

(단위 : 톤)

도별	도별 보급종(24품종) 공급											
	계	고시히 카리	대보	대안	동진찰	맛드림	미품	백옥찰	삼광	새누리	새일미	신동진
계	25,025	390	40	305	780	70	540	65	3,920	3,800	2,190	2,950
경기	3,100	380		225		70			270			
강원	1,400			80					200			
충북	1,250		40						400			
충남	4,525	10			50				2,550	500	510	
전북	3,900				400					750		2,100
전남	4,750				300		540			1,400	1,000	850
경북	3,550							65	500	350		
경남	2,550				30					800	680	

도별	도별 보급종 공급													
	영호 진미	오대	오륜	운광	일품	조평	추청	친들	하이 아미	호평	해품	화선찰	탄력 공급	총체 (영우)
계	510	915	100	1,040	2,065	100	2,925	400	40	30	200	35	1,590	25
경기		35					2,015					35	70	
강원		810	100	130			70						10	
충북		70		20			580		40				100	
충남				80			100	400					300	25
전북				250		100							300	
전남	130			150						30			350	
경북				150	2,065						140		280	
경남	380			260			160				60		180	

○ 보급종 생산계획 면적 및 종자량

<사업기관별>

구 분		보 급 종(24품종)					
		계	고시히카리	대보	대안	동진찰	맛드림
계	면 적(ha)	4,717.0	77.3	6.7	61.8	155.8	14.0
	종 자 량(kg)	244,487	3,875	335	3,178	8,570	700
	생산계획(톤)	27,158	425	44	333	857	77
	공급계획(톤)	25,025	390	40	305	780	70
경기	면 적	615.5	77.3		44.5		14.0
	종 자 량	30,785	3,875		2,227		700
	생 산 계 획	3,461	425		245		77
	공 급 계 획	3,175	390		225		70
강원	면 적	316.5			17.3		
	종 자 량	17,411			951		
	생 산 계 획	1,667			88		
	공 급 계 획	1,515			80		
충북	면 적	238.6		6.7			
	종 자 량	11,930		335			
	생 산 계 획	1,430		44			
	공 급 계 획	1,300		40			
충남	면 적	801.0					
	종 자 량	40,050					
	생 산 계 획	4,728					
	공 급 계 획	4,385					
전북	면 적	820.9				155.8	
	종 자 량	45,152				8,570	
	생 산 계 획	4,842				857	
	공 급 계 획	4,430				780	
전남	면 적	853.3					
	종 자 량	43,453					
	생 산 계 획	4,647					
	공 급 계 획	4,300					
경북	면 적	642.0					
	종 자 량	32,100					
	생 산 계 획	3,830					
	공 급 계 획	3,550					
경남	면 적	429.2					
	종 자 량	23,606					
	생 산 계 획	2,553					
	공 급 계 획	2,370					

* 공급계획량은 타 도에 공급할 물량이 포함됨

○ 보급종 생산계획 면적 및 종자량

<사업기관별>

구 분		보 급 종						
		미품	백옥찰	삼광	새누리	새일미	신동진	영호진미
계	면 적 (h a)	116.6	12.4	770.1	773.9	448.5	595.9	103.0
	종 자 량(kg)	5,840	620	38,613	40,222	23,108	32,780	5,525
	생 산 계 획(톤)	583	68	4,225	4,106.2	2,361.5	3,202	552.5
	공 급 계 획(톤)	540	65	3,920	3,800	2,190	2,950	510
경기	면 적			53.5				
	종 자 량			2,673				
	생 산 계 획			294				
	공 급 계 획			270				
강원	면 적			22.0				
	종 자 량			1,210				
	생 산 계 획			110				
	공 급 계 획			100				
충북	면 적			80.8				
	종 자 량			4,040				
	생 산 계 획			445				
	공 급 계 획			400				
충남	면 적			520.0	98.0	100.0		
	종 자 량			26,000	4,900	5,000		
	생 산 계 획			2,860	540	550		
	공 급 계 획			2,650	500	510		
전북	면 적				149.1		444.7	
	종 자 량				8,200		24,460	
	생 산 계 획				820		2,446	
	공 급 계 획				750		2,250	
전남	면 적	116.6			302.4	215.5	151.2	28.0
	종 자 량	5,840			15,120	10,793	8,320	1,400
	생 산 계 획	583			1,512	1,080	756	140
	공 급 계 획	540			1,400	1,000	700	130
경북	면 적		12.4	93.8	68.0			
	종 자 량		620	4,690	3,400			
	생 산 계 획		68	516	374			
	공 급 계 획		65	500	350			
경남	면 적				156.4	133.0		75.0
	종 자 량				8,602	7,315		4,125
	생 산 계 획				860.2	731.5		412.5
	공 급 계 획				800	680		380

○ 보급종 생산계획 면적 및 종자량

<사업기관별>

구 분		보급종						
		오대	오륜	운광	일품	조평	추청	친들
계	면 적 (h a)	200.4	21.2	205.7	409.8	20.2	579.0	78.0
	종 자 량(kg)	10,950	1,170	10,999	20,490	1,111	29,107	3,900
	생 산 계 획(톤)	1,009	110	1,147.8	2,254	111	3,184.7	430
	공 급 계 획(톤)	915	100	1,040	2,065	100	2,925	400
경기	면 적						419.1	
	종 자 량						20,955	
	생 산 계 획						2,305	
	공 급 계 획						2,115	
강원	면 적	186.0	21.2	70.0				
	종 자 량	10,230	1,170	3,850				
	생 산 계 획	930	110	418				
	공 급 계 획	845	100	380				
충북	면 적	14.4					128.5	
	종 자 량	720					6,425	
	생 산 계 획	79					707	
	공 급 계 획	70					650	
충남	면 적							78.0
	종 자 량							3,900
	생 산 계 획							430
	공 급 계 획							400
전북	면 적			51.1		20.2		
	종 자 량			2,811		1,111		
	생 산 계 획			281		111		
	공 급 계 획			250		100		
전남	면 적			33.0				
	종 자 량			1,650				
	생 산 계 획			165				
	공 급 계 획			150				
경북	면 적			30.0	409.8			
	종 자 량			1,500	20,490			
	생 산 계 획			165	2,254			
	공 급 계 획			150	2,065			
경남	면 적			21.6			31.4	
	종 자 량			1,188			1,727	
	생 산 계 획			118.8			172.7	
	공 급 계 획			110			160	

○ 보급종 생산계획 면적 및 종자량

<사업기관별>

구 분		보 급 종					
		하이아미	호평	해품	화선찰	탄력공급량	총체(영우)
계	면 적(ha)	8.2	6.6	39.8	7.1		5.0
	종 자 량(kg)	410	330	2,049	355		250
	생 산 계 획(톤)	45	33	218.9	39	1,713.4	28
	공 급 계 획(톤)	40	30	200	35	1,590	25
경기	면 적				7.1		
	종 자 량				355		
	생 산 계 획				39	76	
	공 급 계 획				35	70	
강원	면 적						
	종 자 량						
	생 산 계 획					11	
	공 급 계 획					10	
충북	면 적	8.2					
	종 자 량	410					
	생 산 계 획	45				110	
	공 급 계 획	40				100	
충남	면 적						5
	종 자 량						250
	생 산 계 획					320	28
	공 급 계 획					300	25
전북	면 적						
	종 자 량						
	생 산 계 획					327	
	공 급 계 획					300	
전남	면 적		6.6				
	종 자 량		330				
	생 산 계 획		33			378	
	공 급 계 획		30			350	
경북	면 적			28.0			
	종 자 량			1,400			
	생 산 계 획			154		299	
	공 급 계 획			140		280	
경남	면 적			11.8			
	종 자 량			649			
	생 산 계 획			64.9		192.4	
	공 급 계 획			60		180	

○ 비 원 종

구 분		원 종 (28품종)					
		계	고시히카리	고향찰	대보	대안	동진찰
계	면 적 (a)	8,303	92	50	76	120	250
	종 자 량 (kg)	3,915	38	20	38	48	125
	공 급 량 (kg)	373,650	4,140	2,250	3,420	5,400	11,250
경기	면 적	795	92			50	
	종 자 량	320	38			20	
	공 급 량	35,775	4,140			2,250	
강원	면 적	600		50		70	
	종 자 량	240		20		28	
	공 급 량	27,000		2,250		3,150	
충북	면 적	500			76		
	종 자 량	251			38		
	공 급 량	22,500			3,420		
충남	면 적	1,793					
	종 자 량	899					
	공 급 량	80,700					
전북	면 적	1,480					190
	종 자 량	745					95
	공 급 량	66,600					8,550
전남	면 적	1,000					60
	종 자 량	500					30
	공 급 량	45,000					2,700
경북	면 적	1,050					
	종 자 량	415					
	공 급 량	47,250					
경남	면 적	1,085					
	종 자 량	545					
	공 급 량	48,825					

○ 비 원 중

구 분		원 중					
		맛드림	미품	백옥찰	삼광	새누리	새일미
계	면 적 (a)	25	58	40	1,120	1,303	1,172
	종 자 량 (kg)	10	30	15	532	643	586
	공 급 량 (kg)	1,125	2,600	1,800	50,370	58,675	52,700
경기	면 적	25			70		
	종 자 량	10			28		
	공 급 량	1,125			3,150		
강원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북	면 적				126		
	종 자 량				63		
	공 급 량				5,670		
충남	면 적		58		714	268	452
	종 자 량		30		357	135	226
	공 급 량		2,600		32,100	12,100	20,300
전북	면 적					220	60
	종 자 량					110	30
	공 급 량					9,900	2,700
전남	면 적					400	350
	종 자 량					200	175
	공 급 량					18,000	15,750
경북	면 적			40	210	80	
	종 자 량			15	84	30	
	공 급 량			1,800	9,450	3,600	
경남	면 적					335	310
	종 자 량					168	155
	공 급 량					15,075	13,950

○ 비 원 중

구 분		원 중					
		수광	신동진	영호진미	오대	오륜	운광
계	면 적 (a)	60	750	335	287	100	440
	총 자 량 (kg)	30	380	164	119	40	201
	공 급 량 (kg)	2,700	33,750	15,075	12,915	4,500	19,800
경기	면 적						
	총 자 량						
	공 급 량						
강원	면 적				250	100	100
	총 자 량				100	40	40
	공 급 량				11,250	4,500	4,500
충북	면 적				37		25
	총 자 량				19		13
	공 급 량				1,665		1,125
충남	면 적						
	총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60	750				110
	총 자 량	30	380				55
	공 급 량	2,700	33,750				4,950
전남	면 적			80			50
	총 자 량			40			25
	공 급 량			3,600			2,250
경북	면 적			40			80
	총 자 량			16			30
	공 급 량			1,800			3,600
경남	면 적			215			75
	총 자 량			108			38
	공 급 량			9,675			3,375

○ 비 원 중

구 분		원 중					
		일품	조평	참드림	청아	추청	친농
계	면 적 (a)	520	90	20	83	781	108
	종 자 량 (kg)	210	45	8	42	341	54
	공 급 량 (kg)	23,400	4,050	900	3,700	35,145	4,900
경기	면 적			20		500	
	종 자 량			8		200	
	공 급 량			900		22,500	
강원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북	면 적					206	
	종 자 량					103	
	공 급 량					9,270	
충남	면 적				83		108
	종 자 량				42		54
	공 급 량				3,700		4,900
전북	면 적		90				
	종 자 량		45				
	공 급 량		4,050				
전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경북	면 적	520					
	종 자 량	210					
	공 급 량	23,400					
경남	면 적					75	
	종 자 량					38	
	공 급 량					3,375	

○ 비 원 중

구 분		원 중				
		친들	하이아미	해품	호반	화선찰
계	면 적 (a)	110	50	215	30	18
	종 자 량 (kg)	55	23	98	12	8
	공 급 량 (kg)	5,000	2,250	9,675	1,350	810
경기	면 적		20			18
	종 자 량		8			8
	공 급 량		900			810
강원	면 적				30	
	종 자 량				12	
	공 급 량				1,350	
충북	면 적		30			
	종 자 량		15			
	공 급 량		1,350			
충남	면 적	110				
	종 자 량	55				
	공 급 량	5,000				
전북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남	면 적			60		
	종 자 량			30		
	공 급 량			2,700		
경북	면 적			80		
	종 자 량			30		
	공 급 량			3,600		
경남	면 적			75		
	종 자 량			38		
	공 급 량			3,375		

○ 비 원원종

구 분		원원종 (34품종)								
		계	고시 히카리	고향찰	대보	대안	동진찰	맛드림	미소미	미품
계	면 적 (a)	260.7	2.5	2.0	0.7	3.0	6.0	2.0	0.3	11.0
	종 자 량 (kg)	39.12	0.38	0.30	0.10	0.45	0.90	0.30	0.05	1.65
	공 급 량 (kg)	3,910.0	37.5	30.0	10.0	45.0	90.0	30.0	5.0	165.0
경기	면 적	24.0	2.5			1.0		2.0		
	종 자 량	3.62	0.38			0.15		0.30		
	공 급 량	360.0	37.5			15.0		30.0		
강원	면 적	25.0		2.0		2.0				
	종 자 량	3.75		0.30		0.30				
	공 급 량	375.0		30.0		30.0				
충북	면 적	10.7			0.7				0.3	
	종 자 량	1.60			0.10				0.05	
	공 급 량	160.0			10.0				5.0	
충남	면 적	47.0								3.0
	종 자 량	7.05								0.45
	공 급 량	705.0								45.0
전북	면 적	48.0					6.0			
	종 자 량	7.20					0.90			
	공 급 량	720.0					90.0			
전남	면 적	44.0								5.0
	종 자 량	6.60								0.75
	공 급 량	660.0								75.0
경북	면 적	32.0								
	종 자 량	4.80								
	공 급 량	480.0								
경남	면 적	30.0								3.0
	종 자 량	4.50								0.45
	공 급 량	450.0								45.0

○ 비 원원종

구 분		원원종								
		백옥찰	삼광	새누리	새일미	수광	신동진	영호진미	오대	오륜
계	면 적 (a)	3.0	33.2	25.0	11.0	2.0	30.0	14.0	13.3	2.0
	종 자 량 (kg)	0.45	4.98	3.75	1.65	0.30	4.50	2.10	2.00	0.30
	공 급 량 (kg)	45.0	497.5	375.0	165.0	30.0	450.0	210.0	200.0	30.0
경기	면 적		2.5							
	종 자 량		0.38							
	공 급 량		37.5							
강원	면 적		3.0						12.0	2.0
	종 자 량		0.45						1.80	0.30
	공 급 량		45.0						180.0	30.0
충북	면 적		2.7						1.3	
	종 자 량		0.40						0.20	
	공 급 량		40.0						20.0	
충남	면 적		20.0	5.0	6.0					
	종 자 량		3.00	0.75	0.90					
	공 급 량		300.0	75.0	90.0					
전북	면 적			8.0		2.0	25.0			
	종 자 량			1.20		0.30	3.75			
	공 급 량			120.0		30.0	375.0			
전남	면 적	2.0		4.0			5.0	6.0		
	종 자 량	0.30		0.60			0.75	0.90		
	공 급 량	30.0		60.0			75.0	90.0		
경북	면 적	1.0	5.0	3.0				3.0		
	종 자 량	0.15	0.75	0.45				0.45		
	공 급 량	15.0	75.0	45.0				45.0		
경남	면 적			5.0	5.0			5.0		
	종 자 량			0.75	0.75			0.75		
	공 급 량			75.0	75.0			75.0		

○ 비 원원종

구 분		원원종								
		운광	일미	일품	조평	중생골드	진수미	참드림	청아	추청
계	면 적 (a)	12.7	6.0	14.0	5.0	0.3	2.0	3.0	2.0	18.7
	종자량(kg)	1.90	0.90	2.10	0.75	0.05	0.30	0.45	0.30	2.80
	공급량(kg)	190.0	90.0	210.0	75.0	5.0	30.0	45.0	30.0	280.0
경기	면 적							3.0		12.0
	종 자 량							0.45		1.80
	공 급 량							45.0		180.0
강원	면 적	2.0								
	종 자 량	0.30								
	공 급 량	30.0								
충북	면 적	0.7				0.3				3.7
	종 자 량	0.10				0.05				0.55
	공 급 량	10.0				5.0				55.0
충남	면 적								2.0	
	종 자 량								0.30	
	공 급 량								30.0	
전북	면 적	4.0			3.0					
	종 자 량	0.60			0.45					
	공 급 량	60.0			45.0					
전남	면 적	2.0	6.0							
	종 자 량	0.30	0.90							
	공 급 량	30.0	90.0							
경북	면 적	2.0		14.0			2.0			
	종 자 량	0.30		2.10			0.30			
	공 급 량	30.0		210.0			30.0			
경남	면 적	2.0			2.0					3.0
	종 자 량	0.30			0.30					0.45
	공 급 량	30.0			30.0					45.0

○ 비 원원종

구 분		원원종							
		친들	하이아미	해품	현품	호반	호평	화선찰	히또메보레
계	면 적 (a)	6.0	1.5	12.0	11.0	2.0	2.0	0.5	1.0
	종자량(kg)	0.90	0.23	1.80	1.65	0.30	0.30	0.08	0.15
	공급량(kg)	90.0	22.5	180.0	165.0	30.0	30.0	7.5	15.0
경기	면 적		0.5					0.5	
	종 자 량		0.08					0.08	
	공 급 량		7.5					7.5	
강원	면 적					2.0			
	종 자 량					0.30			
	공 급 량					30.0			
충북	면 적		1.0						
	종 자 량		0.15						
	공 급 량		15.0						
충남	면 적	6.0		2.0	3.0				
	종 자 량	0.90		0.30	0.45				
	공 급 량	90.0		30.0	45.0				
전북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남	면 적			5.0	6.0		2.0		1.0
	종 자 량			0.75	0.90		0.30		0.15
	공 급 량			75.0	90.0		30.0		15.0
경북	면 적			2.0					
	종 자 량			0.30					
	공 급 량			30.0					
경남	면 적			3.0	2.0				
	종 자 량			0.45	0.30				
	공 급 량			45.0	30.0				

나. 콩

○ 보급종 공급계획(도별)

(단위 : 톤)

구 분		보급종 (6품종)									
		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주
계		1,610	150	190	220	180	160	240	290	80	100
일 반 콩 (5)	소 계	1,420	150	190	220	180	145	165	290	80	-
	대 원	1,186.6	145.6	140	220	160	145	50	290	36	
	대 풍	25		25							
	선 유	20				20					
	연 풍	4.4	4.4								
	태 광	184		25				115		44	
나 물 콩 (1)	소 계	190	-	-	-	-	15	75	-	-	100
	풍산나물	190					15	75			100

○ 보급종 생산계획 면적 및 종자량

<사업기관별>

구 분		보급종 (6품종)						
		계	대원	대풍	선유	연풍	태광	풍산나물
계	면 적 (ha)	1,144.0	825.5	17.0	15.0	3.3	136.0	147.2
	종자량 (kg)	67,768	49,728	1,020	900	195	8,148	7,777
	생산계획(톤)	1,681	1,238.4	26	21	4.6	193	198
	공급계획(톤)	1,610	1,186.6	25	20	4.4	184	190
경기	면 적	111.4	108.1			3.3		
	종 자 량	6,885	6,690			195		
	생 산 계 획	156	151.4			4.6		
	공 급 계 획	150	145.6			4.4		
강원	면 적	164.0	123.0	17.0			24.0	
	종 자 량	9,840	7,380	1,020			1,440	
	생 산 계 획	246	184	26			36	
	공 급 계 획	240	180	25			35	
충북	면 적	150.0	150.0					
	종 자 량	9,000	9,000					
	생 산 계 획	240	240					
	공 급 계 획	230	230					
충남	면 적	135.0	120.0		15.0			
	종 자 량	8,100	7,200		900			
	생 산 계 획	189	168		21			
	공 급 계 획	180	160		20			
전북	면 적	120.8	94.3					26.5
	종 자 량	6,983	5,658					1,325
	생 산 계 획	169	132					37
	공 급 계 획	160	125					35
전남	면 적	165.3					86.3	79.0
	종 자 량	9,128					5,178	3,950
	생 산 계 획	232					121	111
	공 급 계 획	220					115	105
경북	면 적	203.0	203.0					
	종 자 량	12,180	12,180					
	생 산 계 획	325	325					
	공 급 계 획	310	310					
경남	면 적	52.8	27.1				25.7	
	종 자 량	3,150	1,620				1,530	
	생 산 계 획	74	38				36	
	공 급 계 획	70	36				34	
제주	면 적	41.7						41.7
	종 자 량	2,502						2,502
	생 산 계 획	50						50
	공 급 계 획	50						50

* 공급계획량은 타 도에 공급할 물량이 포함됨

○ 콩 원종

구 분		원종 (13품종)						
		계	강일	대원	대찬	대풍	선유	선풍
계	면 적 (a)	7,570	100	5,309	315	100	150	100
	종 자 량(kg)	4,216	50	2,952	189	50	90	60
	공 급 량(kg)	90,842	1,200	63,710	3,780	1,200	1,800	1,200
경기	면 적	556		530				
	종 자 량	278		265				
	공 급 량	6,672		6,360				
강원	면 적	900	100	600		100		
	종 자 량	450	50	300		50		
	공 급 량	10,800	1,200	7,200		1,200		
충북	면 적	684		649	15			
	종 자 량	410		389	9			
	공 급 량	8,210		7,790	180			
충남	면 적	800		650			150	
	종 자 량	480		390			90	
	공 급 량	9,600		7,800			1,800	
전북	면 적	1,030		880				100
	종 자 량	613		528				60
	공 급 량	12,360		10,560				1,200
전남	면 적	1,000		300	250			
	종 자 량	575		180	150			
	공 급 량	12,000		3,600	3,000			
경북	면 적	1,300		1,200	50			
	종 자 량	660		600	30			
	공 급 량	15,600		14,400	600			
경남	면 적	1,000		500				
	종 자 량	600		300				
	공 급 량	12,000		6,000				
제주	면 적	300						
	종 자 량	150						
	공 급 량	3,600						

○ 콩 원종

구 분		원 종						
		연풍	우람	진풍	청아	태광	태선	풍산나물
계	면 적 (a)	26	20	50	100	620	80	600
	종 자 량(kg)	13	12	30	50	372	48	300
	공 급 량(kg)	312	240	600	1,200	7,440	960	7,200
경기	면 적	26						
	종 자 량	13						
	공 급 량	312						
강원	면 적				100			
	종 자 량				50			
	공 급 량				1,200			
충북	면 적		20					
	종 자 량		12					
	공 급 량		240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50
	종 자 량							25
	공 급 량							600
전남	면 적					200		250
	종 자 량					120		125
	공 급 량					2,400		3,000
경북	면 적			50				
	종 자 량			30				
	공 급 량			600				
경남	면 적					420	80	
	종 자 량					252	48	
	공 급 량					5,040	960	
제주	면 적							300
	종 자 량							150
	공 급 량							3,600

○ 콩 원원종

구 분		원원종 (18품종)						
		계	강일	강풍	대원	대찬	대풍	선유
계	면 적 (a)	509	5	3	267	31	5	10
	종 자 량 (kg)	203.6	2.0	1.2	106.8	12.4	2.0	4.0
	공 급 량 (kg)	5,090	50	30	2,670	310	50	100
경기	면 적	30		3	17			
	종 자 량	12.0		1.2	6.8			
	공 급 량	300		30	170			
강원	면 적	50	5		30		5	
	종 자 량	20.0	2.0		12.0		2.0	
	공 급 량	500	50		300		50	
충북	면 적	33.0			30.0	1.0		
	종 자 량	13.2			12.0	0.4		
	공 급 량	330			300	10		
충남	면 적	55			30	5		10
	종 자 량	22.0			12.0	2.0		4.0
	공 급 량	550			300	50		100
전북	면 적	90			50	5		
	종 자 량	36.0			20.0	2.0		
	공 급 량	900			500	50		
전남	면 적	80			25	5		
	종 자 량	32.0			10.0	2.0		
	공 급 량	800			250	50		
경북	면 적	90			65	15		
	종 자 량	36.0			26.0	6.0		
	공 급 량	900			650	150		
경남	면 적	50			20			
	종 자 량	20.0			8.0			
	공 급 량	500			200			
제주	면 적	31						
	종 자 량	12.4						
	공 급 량	310						

○ 콩 원원종

구 분		원원종					
		선풍	신화	연풍	우람	진풍	참을
계	면 적 (a)	40	6	8	2	15	5
	종 자 량 (kg)	16.0	2.4	3.2	0.8	6.0	2.0
	공 급 량 (kg)	400	60	80	20	150	50
경기	면 적			8			
	종 자 량			3.2			
	공 급 량			80			
강원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북	면 적				2		
	종 자 량				0.8		
	공 급 량				20		
충남	면 적	10					
	종 자 량	4.0					
	공 급 량	100					
전북	면 적	25					
	종 자 량	10.0					
	공 급 량	250					
전남	면 적	5					
	종 자 량	2.0					
	공 급 량	50					
경북	면 적					5	
	종 자 량					2.0	
	공 급 량					50	
경남	면 적					10	5
	종 자 량					4.0	2.0
	공 급 량					100	50
제주	면 적		6				
	종 자 량		2.4				
	공 급 량		60				

○ 콩 원원종

구 분		원원종					
		청아	청자3호	태광	태선	풍산나물	황금올
계	면 적 (a)	10	2	35	5	55	5
	종자량(kg)	4.0	0.8	14.0	2.0	22.0	2.0
	공급량(kg)	100	20	350	50	550	50
경기	면 적		2				
	종 자 량		0.8				
	공 급 량		20				
강원	면 적	10					
	종 자 량	4.0					
	공 급 량	100					
충북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10	
	종 자 량					4.0	
	공 급 량					100	
전남	면 적			20		20	5
	종 자 량			8.0		8.0	2.0
	공 급 량			200		200	50
경북	면 적				5		
	종 자 량				2.0		
	공 급 량				50		
경남	면 적			15			
	종 자 량			6.0			
	공 급 량			150			
제주	면 적					25	
	종 자 량					10.0	
	공 급 량					250	

다. 감자

○ 원원종, 원종

구 분		원 원 종			원 종		
		면 적	종자량	공급량	면 적	종자량	공급량
계		a	kg	kg	a	kg	kg
		450	5,850	67,500	4,470	62,580	804,600
감 자	수 미	436	5,668	65,400	4,360	61,040	784,800
	하 령	4	52	600	20	280	3,600
	조 풍	8	104	1,200	80	1,120	14,400
	서 흥	2	26	300	10	140	1,800

라. 옥수수

구 분		원 원 종			원 종			보 급 종		
		면 적	종자량	공급량	면 적	종자량	공급량	면 적	종자량	공급량
계		a	kg	kg	a	kg	kg	ha	kg	톤
					250	50	1,250			
식용	미백2호 (HW9)				250	50	1,250			

마. 팔

구 분		원원종(5품종)					
		계	충주	경원	새길	서나	아라리
계	면 적 (a)	24.3	6.0	3.3	5.0	3.0	7.0
	종자량(kg)	7.29	1.80	0.99	1.50	0.90	2.10
	공급량(kg)	146	36	20	30	18	42
경기	면 적	3.3		3.3			
	종 자 량	0.99		0.99			
	공 급 량	20		20			
강원	면 적	7.0					7.0
	종 자 량	2.10					2.10
	공 급 량	42					42
충북	면 적	1.0	1.0				
	종 자 량	0.30	0.30				
	공 급 량	6	6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3.0				3.0	
	종 자 량	0.90				0.90	
	공 급 량	18				18	
전남	면 적	5.0	5.0				
	종 자 량	1.50	1.50				
	공 급 량	30	30				
경북	면 적	5.0			5.0		
	종 자 량	1.50			1.50		
	공 급 량	30			30		
경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구 분		원종(3품종)				보급종(1품종)	
		계	충주	경원	새길	계	아라리
계	면 적 (a)	235	70	50	115		
	종자량(kg)	94	28	20	46		
	공급량(kg)	1,645	490	350	805	1,500	1,500
경기	면 적	50		50			
	종 자 량	20		20			
	공 급 량	350		350			
강원	면 적	50			50		
	종 자 량	20			20		
	공 급 량	350			350	1,500	1,500
충북	면 적	10	10				
	종 자 량	4	4				
	공 급 량	70	70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30	30				
	종 자 량	12	12				
	공 급 량	210	210				
전남	면 적	30	30				
	종 자 량	12	12				
	공 급 량	210	210				
경북	면 적	25			25		
	종 자 량	10			10		
	공 급 량	175			175		
경남	면 적	40			40		
	종 자 량	16			16		
	공 급 량	280			280		

바. 녹 두

구 분		원원종(2품종)			원 종(1품종)	
		계	다현	산포	계	다현
계	면 적 (a)	15	9	6	95	95
	종 자 량 (kg)	2.25	1.35	0.90	14	14
	공 급 량 (kg)	75	45	30	475	475
경기	면 적	1	1		35	35
	종 자 량	0.15	0.15		5	5
	공 급 량	5	5		175	175
강원	면 적				-	
	종 자 량				-	
	공 급 량				-	
충북	면 적				-	
	종 자 량				-	
	공 급 량				-	
충남	면 적				-	
	종 자 량				-	
	공 급 량				-	
전북	면 적	1	1		-	
	종 자 량	0.15	0.15		-	
	공 급 량	5	5		-	
전남	면 적	12	6	6	20	20
	종 자 량	1.80	0.90	0.90	3	3
	공 급 량	60	30	30	100	100
경북	면 적	1	1		20	20
	종 자 량	0.15	0.15		3	3
	공 급 량	5	5		100	100.0
경남	면 적				20	20
	종 자 량				3	3
	공 급 량				100	100
제주	면 적				-	
	종 자 량				-	
	공 급 량				-	

사. 참 개

구 분		원원종 (3품종)			
		계	황백	서둔	건백
계	면 적 (a)	15.3	2.0	1.0	12.3
	종자량(kg)	0.77	0.10	0.05	0.62
	공급량(kg)	30.5	4.0	2.0	24.5
경기	면 적	2.0	2.0		
	종 자 량	0.10	0.10		
	공 급 량	4.0	4.0		
강원	면 적	1.0		1.0	
	종 자 량	0.05		0.05	
	공 급 량	2.0		2.0	
충북	면 적	0.3			0.3
	종 자 량	0.02			0.02
	공 급 량	0.5			0.5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2.0			2.0
	종 자 량	0.10			0.10
	공 급 량	4.0			4.0
전남	면 적	1.0			1.0
	종 자 량	0.05			0.05
	공 급 량	2.0			2.0
경북	면 적	6.0			6.0
	종 자 량	0.30			0.30
	공 급 량	12.0			12.0
경남	면 적	3.0			3.0
	종 자 량	0.15			0.15
	공 급 량	6.0			6.0
제주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구 분		원종 (4품종)				
		계	황백	서둔	건백	고품
계	면 적 (a)	340	45	20	265	10
	종 자 량(kg)	17.05	2.30	1.00	13.25	0.50
	공 급 량(kg)	1,035	150	60	795	30
경기	면 적	45	45			
	종 자 량	2.30	2.3			
	공 급 량	150	150			
강원	면 적	20		20		
	종 자 량	1.0		1.0		
	공 급 량	60		60		
충북	면 적	10				10
	종 자 량	0.50				0.5
	공 급 량	30				30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15			15	
	종 자 량	0.75			0.75	
	공 급 량	45			45	
전남	면 적	10			10	
	종 자 량	0.50			0.5	
	공 급 량	30			30	
경북	면 적	200			200	
	종 자 량	10.00			10.0	
	공 급 량	600			600	
경남	면 적	40			40	
	종 자 량	2.00			2.0	
	공 급 량	120			120	
제주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아. 들 깨

구 분		원원종 (2품종)			원종 (2품종)		
		계	다유	들샘	계	다유	들샘
계	면 적 (a)	4.1	3.8	0.3	139	129	10
	종 자 량 (kg)	0.14	0.13	0.01	4.25	3.95	0.30
	공 급 량 (kg)	10.7	9.7	1.0	415	385	30
경기	면 적	1.0	1.0		30	30	
	종 자 량	0.03	0.03		1.00	1.00	
	공 급 량	3.0	3.0		90	90	
강원	면 적	0.5	0.5		10	10	
	종 자 량	0.02	0.02		0.30	0.30	
	공 급 량	1.5	1.5		30	30	
충북	면 적	1.0	1.0		40	40	
	종 자 량	0.04	0.04		1.20	1.20	
	공 급 량	1.2	1.2		120	120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1.0	1.0		15	15	
	종 자 량	0.03	0.03		0.45	0.45	
	공 급 량	3.0	3.0		45	45	
전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경북	면 적	0.3	0.3		34	34	
	종 자 량	0.01	0.01		1.00	1.00	
	공 급 량	1.0	1.0		100	100	
경남	면 적	0.3		0.3	10		10
	종 자 량	0.01		0.01	0.30		0.30
	공 급 량	1.0		1.0	30		30
제주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자. 땅콩

구 분		원원종 (5품종)					
		계	참평	풍안	대광	팔광	신팔광
계	면 적 (a)	18	5	10	1	1	1
	종자량(kg)	18.6	5.5	10.4	0.8	1.1	0.8
	공급량(kg)	181	50	100	10	11	10
경기	면 적	5	5				
	종 자 량	5.5	5.5				
	공 급 량	50	50				
강원	면 적	1			1		
	종 자 량	0.8			0.8		
	공 급 량	10			10		
충북	면 적	1				1	
	종 자 량	1.1				1.1	
	공 급 량	11				11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1					1
	종 자 량	0.8					0.8
	공 급 량	10					10
전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경북	면 적	6		6			
	종 자 량	6.0		6.0			
	공 급 량	60		60			
경남	면 적	4		4			
	종 자 량	4.4		4.4			
	공 급 량	40		40.0			
제주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구 분		원종 (5품종)					
		계	대광	참평	풍안	팔광	신팔광
계	면 적 (a)	159	10	45	84	10	10
	종 자 량 (kg)	172	10	50	93	11	8
	공 급 량 (kg)	1,590	100	450	840	100	100
경기	면 적	45		45			
	종 자 량	50		50			
	공 급 량	450		450			
강원	면 적	10	10				
	종 자 량	10	10				
	공 급 량	100	100				
충북	면 적	10				10	
	종 자 량	11				11	
	공 급 량	100				100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10					10
	종 자 량	8					8
	공 급 량	100					100
전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경북	면 적	54			54		
	종 자 량	60			60		
	공 급 량	540			540		
경남	면 적	30			30		
	종 자 량	33			33		
	공 급 량	300			300		
제주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차. 고구마

		원원종(2품종)			원종(3품종)			
		계	호감미	풍원미	계	신율미	다호미	풍원미
계	면 적 (a)	6	1	5	45	10	5	30
	종 자 량 (kg)	45.0	7.5	37.5	337.5	75.0	37.5	225.0
	공 급 량 (kg)	780	130	650	5,850	1,300	650	3,900
경기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강원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북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충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전북	면 적	2	1	1	15	10	5	
	종 자 량	15.0	7.5	7.5	112.5	75.0	37.5	
	공 급 량	260	130	130	1,950	1,300	650	
전남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경북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경남	면 적	4		4	30			30
	종 자 량	30.0		30.0	225.0			225.0
	공 급 량	520		520	3,900			3,900
제주	면 적							
	종 자 량							
	공 급 량							

4. 부족종자 사용계획

가. 원종 생산(원원종 활용)

(단위 : kg)

작물	인수기관(종자부족)			인계기관(종자보유)											
	도	품종	수량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원종	재증식	
	합 계		2,402	2,402		44		56	55	20	14	9	2,204		
	소 계		1,064	1,064		44		56	55		5	9	895		
벼	경기	대 안	5	5									5	경기	
		추 청	20	20									20	경기	
	강원	대 안	28	28									28	강원	
		고 향 찰	20	20		20									
	충북	대 보	38	38					38						
		삼 광	18	18					18						
		오 대	4	4		4									
		운 광	8	8									8	충북	
		추 청	53	53								9	44	충북	
		하이아미	5	5							5				
	충남	새 일 미	166	166									166	충남	
	전남	새 누 리	200	200									200	전남	
		새 일 미	175	175									175	충남	
		운 광	25	25		20			5						
		해 품	30	30					30						
	경북	삼 광	24	24									24	경북	
		영호진미	16	16									16	경남	
	경남	새 누 리	88	88									88	경남	
새 일 미		91	91									91	충남		
영호진미		44	44					20				24	경남		
운 광		6	6									6	경남		
	소 계		1,338	1,338						20	9	1,309			
콩	경기	대 원	95	95									95	경기	
		대 원	100	100									100	강원	
	강원	대 품	50	50									50	강원	
		대 원	214	214									214	충북	
	충북	대 찬	9	9							9				
		대 원	290	290									290	충남	
	충남	선 유	40	40									40	충남	
		대 원	178	178						20			158	전북	
	전남	태 광	120	120									120	강원	
	경남	대 원	140	140									140	경남	
		태 광	102	102									102	경남	

나. 보급종 생산(원종 활용)

작물	인수기관(종자부족)			인계기관(종자보유)										
	도	품종	수량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보급종	재증식
합 계			77,179	77,179		3,870		10,538	4,383	3,910	1,080	4,888	48,510	
벼	소 계		66,782	66,782		3,030		10,113	1,769	2,810		1,400	47,660	
	경기	고시히까리	500	500									500	경기
	강원	삼 광	1,210	1,210				1,210						
	충북	대 보	335	335				335						
	전북	동 진 찰	1,370	1,370						1,370				
		새 누 리	1,440	1,440						1,440				
		신 동 진	24,460	24,460					1,000				23,460	전북
	전남	미 품	5,840	5,840									5,840	전남
		새 일 미	10,793	10,793				1,253					9,540	충남
		신 동 진	8,320	8,320									8,320	전남
		영호진미	1,400	1,400							1,400			
		운 광	1,650	1,650		1,650								
	경북	운 광	1,500	1,500		1,380			120					
	경남	새 일 미	7,315	7,315				7,315						
		해 품	649	649					649					
콩	소 계		10,397	10,397		840		425	2,614	1,100	1,080	3,488	850	
	경기	대 원	425	425				425						
	강원	대 원	1,080	1,080						1,080				
	충북	대 원	2,614	2,614					2,614					
	전북	풍산나물	1,100	1,100						1,100				
	전남	태 광	5,178	5,178		840						3,488	850	전남

5. 벼·콩 보급종 통합 채종계획

○ 벼 : 1,095톤 (7품종)

품종명	물 량 (톤)	공급기관	생산기관	비 고
합 계	1,095	-	-	
고시히까리	10	충남	경기	
추 칭	100	충남		
운 광	20	충북	강원	
	80	충남		
	150	경남		
오 대	35	경기		
추 칭	70	강원	충북	
삼 광	100	강원	충남	
동 진 찰	50	충남	전북	
	300	전남		
	30	경남		
신 동 진	150	전남		

○ 콩 : 130톤 (3품종)

품종명	물 량 (톤)	공급기관	생산기관	비 고
합 계	130	-	-	
대 원	40	전남	강원	
태 광	10	경남		
대 원	10	전남	충북	
풍 산 나 물	20	제주	전북	
풍 산 나 물	30	제주	전남	
대 원	20	전북	경북	



V

단계별 사업담당 및 종자생산 기준

V

단계별 사업담당 및 종자생산 기준

1. 종자생산 단계별 사업 담당

	원 원 종	원 종	보 급 종
벼	각도 농업기술원	각도 종자관리소 등	국립종자원 (경기도종자관리소)
콩	"	"	국립종자원 (경기도종자관리소, 제주도농업기술원)
옥수수	강원도 농업기술원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
감 자	강 원 도 감자종자진흥원	강 원 도 감자종자진흥원	자체생산
팥	각도 농업기술원	각도 종자관리소 등	시·도
녹 두	"	"	"
고구마	"	"	"
참 깨	"	"	"
들 깨	"	"	"
땅 콩	"	"	"

* 광역시(특별시 포함) 보급종 공급에 소요되는 원원종, 원종생산은 광역시 승격 이전에 소속 되었던 해당 도에서 생산

2. 작물별, 생산단계별 파종 및 생산 기준량

(단위 : kg/ha)

작 물 별		원 원 종			원 종			보 급 종		
		파종	생산량	배율	파종	생산량	배율	파종	생산량	배율
벼	수 도	15	1,500	100	50	4,500	90	50	5,500	110
	육 도	20	800	40	35	1,200	34	50	1,500	30
	초다수성	15	2,000	133	40	5,000	125	50	7,000	140
콩	일반콩	40	1,000	25	60	1,200	20	60	1,400	23
	콩나물콩	40	1,000	25	50	1,200	24	50	1,400	28
팥		30	600	20	40	700	17.5	50	900	18
녹 두		15	500	33	15	500	33	20	800	40
고 구 마		750	13,000	17	750	13,000	17	750	13,000	17
감자	봄 감 자	1,200	12,000	10	1,300	16,000	12.3	1,600	18,000	11.3
	가을감자	1,800	13,000	7.2	1,800	13,000	7.2	1,800	16,000	8.9
옥수수	광평옥	20	800	40	20	1,000	50	33	1,600	48.5
	일미찰	20	400	20	20	700	35	30	1,300	43.3
	흑진주찰	20	400	20	20	700	35	30	1,200	40.0
땅콩	보통종	80	1,000	12.5	80	1,000	12.5	100	1,200	12
	대립종	110	1,000	9.1	110	1,000	9.1	135	1,200	8.9
참 깨		5	200	40	5	300	60	8	400	50
들 깨		3	300	100	3	300	100	3	400	133
유 채		0.5	1,000	2,000	0.5	1,500	3,000	10	1,800	180

- * ① 보급종 생산기준량은 공급목표량을 감안, 국립종자원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② 옥수수 원원종·원종은 자식계통, 보급종은 단교잡종 생산 기준량임



VI

작물별 세부 추진요령

VI 작물별 세부 추진요령

1. 공통사항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세부실천 계획 수립	가) 채종기관은 자체 종자생산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우량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조치	채 종 기 관
2) 종자활용	<p>가) 단계별 보유종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별, 품종별 생산계획에 의거 차 하급단계 생산용 종자로 무상공급 (단 도비 생산종자는 도지사가 방침결정 시행) <p>나) 채종단계별 종자생산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종자는 생산기관에서 종자검사를 받은 후 차 하급단계 채종기관에 인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를 지원 받아 생산한 벼·콩·감자·옥수수 원원종·원종은 불합격품 및 사용 잔량을 관할 국립종자원(지자체 포함)에 인계 * 다만, 잔량이 10kg이하인 품종은 국립종자원 해당지원과 협의 후 자체 활용가능 ○ 채종 단계별로 안정적인 종자확보를 위해 소요종자가 부족할 경우 반드시 순도검정 등 품질에 대해 사전 확인하여 재증식 활용 <p>다) 종자 수송조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생산에 필요한 종자는 수요기관에서 책임 인수(수송) <p>라) 종자생산 단계별 생산에 활용하고 남는 종자는 차 하급단계 종자생산에 우선활용</p>	채 종 기 관
3) 생산비 보조	<p>가) 생산사업비 국고보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액 : 4,809백만원(전년대비 398 증) ○ 국고보조금액은 도별 사업량에 따라 확정('17.4.) <p>나) 원원종·원종 생산목표량 미달 시 익년도 보조금 차등 지원. 단, 태풍·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p> <p>다) 도별 차 상위단계 종자필요량보다 생산계획량이 적을 경우 익년도 보조금 차등지원</p>	종자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4) 기본식물	<p>가) 농촌진흥청장은 작물별 기본식물 생산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보급종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농가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품종별 적정량 생산</p> <p>나) 종자수급상 긴급한 증식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각 품종별로 여유 있게 생산</p> <p>다) 기본식물 부족으로 하위단계 종자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품종은 동계증식을 통하여 최대한 증량생산</p> <p>라) 종자전염병(키다리병 등) 관리를 위해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고 기본식물 포장 외 지역적응성 포장, 육종 포장의 철저한 관리 실시</p>	농진청
5) 원원종, 원종, 보급종	<p>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p> <p>나)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채종포장 관리, 수확 및 조제작업을 실시. 다만 채종기관장 책임 하에 우량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확립한 재배기준 및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p> <p>다) 고품질 품종 중 각 지자체에 맞는 4~6개 품종을 선발하여 농가에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 실시</p> <p>라) 금년도 신규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을 활용하여 차 하급단계 종자를 생산하는 기관에서는 품종 육성기관으로부터 재배상 품종의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 받아서 종자로 활용</p> <p>마) 원종생산기관의 잉여포장에는 신규 보급종 생산 품종을 최우선 재배하도록 하고, 남는 포장은 찰벼 또는 조생종벼 등 종자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품종을 생산</p>	채 종 기 관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6) 기타	바) 종자생산은 생산된 전량에 대하여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차 하급단계 종자생산에 활용 사) 보급종 생산포장에 전담지도사를 지정하여 파종, 시비, 방제 등 채종포장관리를 책임지도하도록 조치	행정 (종자원) 각 도
	아) 해당도 생산종자는 해당도 책임 하에 공급 ○ 각 도 지사는 종자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계획 수립시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종자공급 차질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사후대책 강구 ○ 종자생산·공급계획에 반영된 보급종 품종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수매품종 선정 등 조치 ○ 일방적인 종자공급 중단 등 종자갱신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때에는 각종 종자생산 공급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	각 도 종자원
	자) 종자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철저한 종자 소독을 하고 채종포와 주변포장관리	채 종 기 관
	가)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등 보급종을 생산하지 않는 곡종은 원종급 이상 생산된 종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종자 생산용으로 활용	각 도 농진청
	나) 종자를 공급받은 농가는 채종농가로 지정하여 보급종 생산농가에 준하는 기술지도 실시	각 도
	다)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의거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농가 보급	각 도 (종자원)
	라) 생산된 보증종자에 대하여 공급실적 대장을 별도 비치 관리하여 우량종자가 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	각 도

항 목	실 천 사 항	시 한	담당 (협조)
	마) 작물별 보급종 사후관리 시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 벼, 콩 ○ 조사항목 : 순도, 진위성, 종자전염병 ○ 조사기준 : 종자검사요령(종자원 고시) ○ 조사연도 : 매년 * 사후관리시험 세부기준 및 방법은 국립종자원 세부추진계획에 의함		종자원
7) 보고내용	가) 주요작물종자 채종단계별 생산실적 보고	2018.1.05	채종기관
	나) 2018년 작물별, 채종단계별 생산계획 수립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별로 4~6개 고품질 품종을 선정하여 농가보급 확대 추진 ○ RPC의 수매 품종 및 시·군별 수매선정 품종 등을 참고하여 종자생산계획에 최대한 반영 ○ 들녘경영체, 정부지원 RPC, 쌀 품종명 관리마크 표시업체, 시·군농업기술센터장이 위의 업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에 대한 품종별 종자수요량 조사 ○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품종 위주로 생산하되 신품종 보급을 위한 농가 홍보 계획을 수립 추진 ○ 익년도 차하급단계 종자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단계 종자는 충분한 물량을 생산 	2018.1.31.	채종기관

2. 비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품종개발	가) 밥맛이 우수하고 병충해, 도복 등에 대한 내재해성을 갖춘 고품질 품종 나) 가공용, 직파적응성, 유색미, 향미 등 특수용도에 적합한 품종 다) 개발된 계통 중 특히 우수한 계통은 농가에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원원종급 종자를 동시생산	농진청
2) 기 본 종	가) 채종단계별, 품종별 수요량을 감안한 생산계획을 수립하되 긴급한 상황 발생시 종자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자생산·보관 나) 품종별 재배특성을 고려, 채종지 선정에 유의하고 특히 신품종 채종의 경우 시험재배성적과 다른 재배 특성 등이 있는 때에는 계통 보고하여 차년도 채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3) 원원종, 원종	가) RPC, 들녘 경영체 등 대량 수요처의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 종자 위주의 품종을 생산하여 차년도 종자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채종하되 생산된 전량을 종자생산 실적으로 보고 나) 최근에 육성된 신품종의 채종기관은 우량종자 생산을 위하여 품종육성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 유지	각 도
4) 보 급 종	가) 채종포장지정·재배관리는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에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품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정·관리 ○ 병해 상습발생 지역은 채종지역에서 제외	종자원 지자체종자 생산기관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p>나) 경영체 중심으로 보급종 우선 공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의 품질고급화로 경쟁력 제고 및 벼 보급종 공급량 확대에 따라 신청·공급체계를 들녘경영체, 정부 지원 RPC, 쌀 품종명 관리마크 표시업체,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위의 업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업체 등 대량수요처 중심으로 우선 신청·공급 전환 ○ 우선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신청량을 우선공급하고, ○ 기타 일반농가, 육묘장 등에 대해서는 품종별 공급 배정량을 도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여 조정·결정 <p>다) 채종농가 생산지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종농가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채종포에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파종, 시비, 포장검사, 건조, 수매 등 재배기술의 현장 지도 <p>라) 농업기술센터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을 위주로 전시포를 설치하여 농가 홍보 ○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품종은 전시포 설치 금지 ○ 재배완료 후 관련기관, 재배농가가 참가하는 평가회 개최 ○ 종자용으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 보증을 받는 등 종자산업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 	<p>농식품부 종자원 각 도</p> <p>종자원 각 도</p> <p>농진청 각 도</p>

3. 콩, 팥, 녹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품종개발	가) 특수용도에 적합한 품종개발 강화 ○ 콩나물용 콩, 밥밀콩, 올콩, 고단백콩 등 ○ 특히 콩나물용 콩은 재래종수준의 소립종 품종 개발을 강화하고, 내병·충성 및 수량성이 우수한 품종개발 나) 다수성, 내재해성, 대립종, 장류용 품종 개발	농진청
2) 원원종, 원종	가) 수입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성이 좋고 농가 및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우량 품종 위주로 생산 나) 우량 신품종의 농가 확대 보급을 위하여 농가 기호도의 변화, 재해 발생 등을 감안하여 생산 품종을 다양화하고 채종량 확대 다) 채종된 종자는 전량 종자검사를 받아 하위 단계 종자로 활용	농진청 각 도
3) 보급 종	가) 콩 보급종 채종포장 지정·관리는 종자산업법 관련규정과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 기준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선정 ○ 병충해 상습 발생지는 제외 나) 신규 육성 품종 채종포장 선정 및 포장관리는 전담 지도사를 지정하여 농가 지도	종자원 각 시·군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p>다) 보급종을 생산하지 않는 팥, 녹두는 여유 종자 전량을 종자로 활용</p> <p>라) 자율 채종포장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지사는 국립종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 자체 자율교환 종자생산계획 수립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갱신을 제고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최근 육성된 신품종 및 특수용도 품종 적극 권장 ○ 채종포장은 대 면적으로 집단화를 유도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을별 단지 조성 및 각 도 원종장 잉여포장 적극 활용 ○ 생산관리지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종 채종 관리에 준하여 전담 지도사를 배치 - 채종농가 채종기술 지도철저 - 파종, 시비, 포장검사, 건조, 수매 등 주요 작업시기에 입회하여 지도 	<p>각 도</p> <p>각 도</p>

4. 감 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기본식물	<p>가) 채종단계별, 품종별 농가선호도 등 수요량을 감안하고, 기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종자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품종을 채종·보관</p> <p>나) 종자산업법과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 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채종하고 채종포장 전면적의 망실재배로 바이러스 감염 등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우량종자를 생산</p> <p>다) 생산된 기본식물은 우선 원원종 생산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되 원원종 생산용으로 활용되지 않은 종자는 농업기술센터의 품종 비교 전시포에 무상 공급하여 농가홍보용으로 활용하거나 통상실시권 부여 등의 조건으로 민간에 공급</p>	농진청 (고령지 농업연구소)
2) 원원종	<p>가) 바이러스 이병방지를 위해 전량 망실재배 실시 ○ 원원종 재배면적 확대 필요시 소요예산 확보 추진(국립종자원, 강원도)</p> <p>나) 원종 생산용으로 활용하고 남은 종자는 보급종으로 격하공급</p>	감자종자 진흥원, 종자원
3) 원 종	<p>가) 생산기관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p> <p>나) 바이러스 이병방지를 위하여 전량 망실 재배</p> <p>다) 씨감자 채종기반 확대를 위해 전북 무주, 경북 봉화·영양군에 원종 지속 공급</p> <p>라) 원종잔량 발생시 보급종으로 격하 공급</p>	감자종자 진흥원 종자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4) 보급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종포장 지정·재배관리는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지정·관리 ○ 채종농가에 대한 사전교육 등 생산지도 철저 ○ 포장격리거리, 윤작체계 등을 고려, 적정면적 확보 ○ 채종농가 선정 및 포장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종포장 지정은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의거 지정 -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봄감자는 가능한 해발 700m 이상 지역 선정 ○ 채종포장관리 전담지도사를 지정하고 파종, 시비, 방제, 이병주 제거 등 포장관리 및 바이러스 식별 등 채종농가에 대한 교육 실시 ○ 수매 및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된 종자는 생산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매 - 전북(무주), 경북(봉화, 영양) 생산종자는 해당도 조기 육아용으로 공급하고, 공급계획량대로 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지도 강화 * 공급목표량 미달시 익년도 원종 배정량 축소 - 강원도에서 생산된 봄감자는 전국단위로 적정 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공급 	감자종자 진흥원, 경북, 전북
5) 공 통	<p>가) 바이러스 등 병충해 검정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정기기(유전자분석장치:PCR 등)의 효율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은 병충해 전문 요원을 지속 양성 - 종자 검사기관은 PCR 등을 활용한 정밀검정 실시 	농진청 (감자종자 진흥원, 전북, 경북)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러스 매개 진딧물 비래상황 정밀예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색수반 : 채종지구별, 단계별로 『채종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재배기준 및 관리 지침』에 의하여 설치 ○ 진딧물 방제 약제(토양처리제) 처리 철저 나) 역병 예방 및 방제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병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병해발생 시에는 초기에 집중 방제를 실시하여 우량종자 생산 다) 풋마름병 예방 및 방제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병 씨감자 사용 ○ 무병지 채종을 위하여 재배 과정 중 유사 증상 발생시 토양검정 실시 ○ 발생필지는 씨감자 생산필지에서 제외 라) 동계검정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작물 : 봄감자 ○ 주관기관 : 국립종자원,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 재배기관 : 강원도감자종자진흥원 ○ 자문기관 : 고령지농업연구소 ○ 검정용 시료의 적기 채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료 채취량(경종기준의 재식 주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원종 : 0.5%, 원종 : 0.2% ○ 검정용 시료 조기 안전 수송 ○ 동계 검정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를 확보하되, 국비확보가 곤란할 시 지자체(강원도) 예산 확보 추진 마) 채종기관 기술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종기관 상호간의 정보교환 활성화 ○ 우량종자 생산 기술의 상호지원 	<p>감자종자 진흥원, 전북, 경북 농진청</p> <p>강원도감자 종자진흥원 (농진청, 종자원)</p> <p>농진청 (감자종자 진흥원)</p>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6) 기 타	바) 채종포장 환경개선 ○ 이병주 조기제거 철저 ○ 적응농약 적기살포 ○ 법정 격리거리내의 오염식물 식재방지 및 제거	감자종자 진흥원
	가) 채종포 주변 정화 ○ 원종 잔량 및 규격외서는 채종지 주변의 환경 정화용으로 유상 공급 가능 ○ 정화 지역에는 보급종 잔량을 최우선 공급	감자종자 진흥원
	나) 민간의 씨감자 생산 참여 유도를 위하여 종자를 생산하지 않는 품종 및 잉여 원종잔량은 생산자 단체에 유상 분양. 다만 민간참여로 보급종 생산이 중단되는 품종은 감자 종자 안정공급을 위하여 원종까지는 정부에서 계속 생산	종자원
	다) 신규육성품종의 농가홍보강화를 위하여 차 하급단계 종자로 활용하고 남은 종자는 농업기술센터의 품종비교 전시포에 무상 공급하여 농가 홍보용으로 활용 ○ 국가품종목록등재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 및 평가회 개최	농진청 (고령지농업 연구소)
	라) 가을감자는 수급전망 등을 분석하여 농진청과 종자원이 협의하여 종자생산체계 확립 여부 검토	농진청 (종자원)

5. 고구마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신품종육성 및 기본식물 생산	<p>가) 고 전분 가공용, 생식용, 고 감미성 등 품종 고유 특성이 우수한 품종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 형질 및 유전자원 수집 확보 ○ 적지 시험 및 각 도 재해 검정시험 강화 <p>나) 계통 유지와 기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발생에 대비하여 품종별로 충분한 종자를 확보</p>	농진청
2) 원원종, 원종	<p>가) 농가선호도가 높은 품종을 위주로 생산하되 기상재해, 병해충 피해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생산량 확보</p> <p>나)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순도높은 우량 종자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고 병해 상습발생 지역은 윤작체계를 유지</p> <p>다) 생산된 종자는 저장고에 보관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감모량 최소화</p> <p>라) 종자 공급시는 반드시 출고검사를 실시하여 불량한 종자의 농가공급 사전방지</p>	농진청
3) 보 급 종 (기타)	<p>가) 주산지를 중심으로 지도기관의 시범포 또는 시·군 채종포를 설치하여 우량종자 생산</p> <p>나) 농가에 보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급종 종자에 준하여 생산·지도하고, 종자검사를 받은 후 보급 하여 우량종자가 농가에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채종 농가 관리 철저</p>	농진청

6. 옥수수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신품종육성	가) 사료용 품종의 적극 개발 육성 ○ 도입품종에 대응한 대체품종 적극 개발 ○ 우량 형질 및 유전자원 수집 확보 ○ 재배 적지시험 및 지역별(각도) 재해검정 시험 강화 나) 단계별 종자생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품종특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차년도 종자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농진청
2) 기본식물, 원원종	가) 기본식물은 계통유지와 기상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품종별로 충분한 종자 확보 나) 현재 보유중인 원원종 재고량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년도 종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다) 재고종자는 종자검사를 받아 우량종자만 활용	농진청, 강원도 옥수수 시험장
3) 원 종	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종만 생산 ○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자연교잡 및 혼종방지를 위하여 종자산업법 관련 규정과 재배기준 및 관리지침 준수 ○ 채종이 어려운 점을 깊이 인식하여 채종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하급 단계 종자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수확물 관리 철저 ○ 옥수수 원종 사용 잔량은 차년도 종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 철저	강원도 농산물 원종장 (종자원)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4) 종자활용	<p>가) 우량종자 중 생산년도가 오래된 원원종, 원종을 먼저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보관중인 원원종, 원종은 발아시험 등을 거쳐 우량종자만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관기간 10년 이상 경과, 발아율이 85% 미만, 향후 종자 활용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매각·폐기 조치 ○ 사용 잔량은 차년도 종자생산용으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보관상태 및 발아율 점검 	종자원

7. 참깨, 들깨, 땅콩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1) 원원종, 원종	가) 참깨, 들깨, 땅콩의 품종별 주요특성을 감안하여 최적 채종포장을 선정 나) 다수확 재배방법을 지양하고 소비 재배를 통한 건전한 종자생산 다) 병충해의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병해 발생시에는 초기 방제를 실시하여 무병 우량종자를 생산 라) 이상 기후, 병해충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종자 확보 마) 신품종의 생육단계를 시험재배 성적과 비교 분석하여 특이사항에 대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여 농가 공급시 문제점 사전 해소	농진청
2) 기 타	가) 해당 시·도지사는 신품종 보급 부진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경영인, 독농가를 채종농가로 선정 * 채종포는 농촌진흥청장이 설치하는 시범포를 우선 지정 활용 나) 농가채종포 설치 및 추진상황 점검 등 농가지도 철저 다) 농가채종포에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채종농가 사전교육, 병충해 예찰강화 등을 통한 우량종자 생산 라) 농가채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는 종자검사 후 희망 농가에 공급	농진청



VII

작물별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요령

VII

작물별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요령

항 목	실 천 사 항				시 한	담당 (협조)
1) 합동진단	가) 병해충 발생 사전진단과 순도유지를 위하여 합동진단 실시 ○ 합동진단 실시회수 및 기관				7월중 8월중	농진청 (생산기관)
	작물별	단계별	회수	진단기관		
	봄감자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1회	농진청(고령지농업연구소), 종자원, 감자종자진흥원		
	옥수수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1회	농진청(식량과학원), 종자원		
나) 합동진단 내용 및 방법 ○ 진단순서 : 기본식물→원원종→원종→보급종 - 단, 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 병해충 진단 및 순도향상을 위한 채종방법 등 정보교환 ○ 채종상의 문제점 분석 및 채종방법 개선조치 ○ 채종기술 지도 및 교육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2) 포장검사	가) 종자산업법 관련규정 및 『종자검사 요령』에 의한 포장검사 실시 나) 작물별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종자원 (농진청, 채종기관)																																
	<table border="1" data-bbox="297 495 1059 559"> <thead> <tr> <th data-bbox="297 495 498 559">작물별</th> <th data-bbox="498 495 659 559">단계별</th> <th data-bbox="659 495 758 559">자체</th> <th data-bbox="758 495 848 559">정기</th> <th data-bbox="848 495 1059 559">검사기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97 559 498 709" rowspan="3">벼, 콩, 고구마, 땅콩, 참깨, 들깨, 팥, 녹두</td> <td data-bbox="498 559 659 607">원원중</td> <td data-bbox="659 559 758 607">1회</td> <td data-bbox="758 559 848 607">1회</td> <td data-bbox="848 559 1059 709" rowspan="3">종자원</td> </tr> <tr> <td data-bbox="498 607 659 656">원 중</td> <td data-bbox="659 607 758 656">1회</td> <td data-bbox="758 607 848 656">1회</td> </tr> <tr> <td data-bbox="498 656 659 709">보급중</td> <td data-bbox="659 656 758 709">1회</td> <td data-bbox="758 656 848 709">1회</td> </tr> <tr> <td data-bbox="297 709 498 840" rowspan="2">봄감자</td> <td data-bbox="498 709 659 757">원원중</td> <td data-bbox="659 709 758 757">2회</td> <td data-bbox="758 709 848 757">2회</td> <td data-bbox="848 709 1059 840" rowspan="2">종자원</td> </tr> <tr> <td data-bbox="498 757 659 840">원 중</td> <td data-bbox="659 757 758 840">2회</td> <td data-bbox="758 757 848 840">2회</td> </tr> <tr> <td data-bbox="297 840 498 934" rowspan="2">옥수수</td> <td data-bbox="498 840 659 889">원원중</td> <td data-bbox="659 840 758 889">2회</td> <td data-bbox="758 840 848 889">2회</td> <td data-bbox="848 840 1059 934" rowspan="2">종자원</td> </tr> <tr> <td data-bbox="498 889 659 934">원 중</td> <td data-bbox="659 889 758 934">2회</td> <td data-bbox="758 889 848 934">2회</td> </tr> </tbody> </table>	작물별	단계별	자체	정기	검사기관	벼, 콩, 고구마, 땅콩, 참깨, 들깨, 팥, 녹두	원원중	1회	1회	종자원	원 중	1회	1회	보급중	1회	1회	봄감자	원원중	2회	2회	종자원	원 중	2회	2회	옥수수	원원중	2회	2회	종자원	원 중	2회	2회	
작물별	단계별	자체	정기	검사기관																														
벼, 콩, 고구마, 땅콩, 참깨, 들깨, 팥, 녹두	원원중	1회	1회	종자원																														
	원 중	1회	1회																															
	보급중	1회	1회																															
봄감자	원원중	2회	2회	종자원																														
	원 중	2회	2회																															
옥수수	원원중	2회	2회	종자원																														
	원 중	2회	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종기관은 정기 검사전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포장 검사 결과를 정기 검사시 제출 다) 검사기준 및 시기는 종자산업법 『종자관리요강(농림 축산식품부고시)』 별표에 의함 라) 채종기관 및 채종농가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종자원장에게 검사신청 마) 채종단계별, 작물별 검사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결과, 총괄표, 수검기관별 검사기간, 품종별 검사항목별 내역 첨부 ○ 포장조건, 특기사항, 문제점, 지적사항, 검사자 의견 등 보고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3) 종자검사	가) 종자검사 기관 - 원원종·원종·보급종 : 국립종자원 나) 검사기준 및 방법은 『종자관리요강』 및 『종자검사요령(종자원 고시)』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종자원예규)』에 의함 다) 채종기관 및 채종농가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사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종자원장에게 검사신청 라) 벼 원원종, 원종은 종자유통과정에서 품종진위, 이형주 발생 등 문제점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하여 기관별(생산기관, 검사기관, 차 하급 인수기관)로 합성시료 보관 - 시료보관 기관 : 원원종 3년, 원종 2년, 보급종 1년				종자원 (채종 기관)
4)채종단계별 지역 단위 합동진단	가) 채종단계별 종자생산포장 합동진단 대상 작물인 감자, 옥수수 이외의 벼, 콩에 대해서도 지역별 합동진단을 실시, 문제점의 조기파악·대처 및 종자생산업무 추진에 반영 나) 지역별 합동진단 ○ 지역단위 관계전문가로 합동 진단반을 편성하여 추진 다) 추진방향 ○ 대상작물 : 벼, 콩 ○ 지역별 합동진단반 구성				농진청 (종자원)
지역	주 관	참여기관		비 고	농진청 (종자원)
중부	식량과학원	도, 종자원 지원, 기술원, 원종장		경기, 강원, 충북, 충남	
호남	식량과학원	"		전북, 전남	
영남	남부작물부	"		경북, 경남	
○ 시기 및 회수 : 작물별 출수기 또는 개화기에 1회					

항 목	실 천 사 항			담당 (협조)						
5) 키다리병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종단계별로 해당지역에서 생산하는 품종으로 하되, 집중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원원종, 원종을 중심으로 실시 ○ 진단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별, 품종별 채종단계(원원종, 원종, 보급종) 포장의 일부면적을 진단 대상포장으로 설정하여 이형주, 이품종 발생상태, 병해충 저항성, 키다리병 발생 및 생육상황 등을 종합 평가 - 포장설정 규모, 생육상황, 진단항목 종합평가, 처리 대책 등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사전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 - 지역간 실시방법 조정 및 종합보고(농진청) ○ 종자생산단계별 키다리병 이병 방지를 위한 채종포 인근 포장 이병주제거 및 종자소독 철저 ○ 채종단계별 종자 소독 시 말아기를 이용하여 30~32℃, 24~48시간을 철저히 준수 ○ 벼 키다리병 발생확인을 위한 채종단계(기본식물·원원종·원종·보급종)별 포장관찰 실시 			농진청 (종자원) 농진청 도 기술원 원종장 종자원						
6) 기타	<table border="1" data-bbox="306 1181 1046 1266"> <thead> <tr> <th data-bbox="306 1181 455 1221">지 역</th> <th data-bbox="458 1181 643 1221">주 관</th> <th data-bbox="646 1181 1046 1221">참 여 기 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6 1225 455 1264">각도</td> <td data-bbox="458 1225 643 1264">국립종자원</td> <td data-bbox="646 1225 1046 1264">농진청·기술원·원종장</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시기 및 회수 : 2회(6~7월)</p> <p>가) 작물별, 시기별, 검사인력 배치 및 특정작물에 대한 종자 및 포장검사기술 교육계획 수립추진</p> <p>나) 종자보증업무 이관에 따라 채종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감자·옥수수의 검사인력 확보 및 기술 축적을 위한 전문 보증 인력 집중 육성</p> <p>다) 벼 품종 육성자가 벼 출수기를 전후하여 원원종, 원종 채종포를 집중 관찰하고 생육장애 및 이형주 등 문제 발생시 현장 지도 조치</p>			지 역	주 관	참 여 기 관	각도	국립종자원	농진청·기술원·원종장	종자원 농진청 채종기관
지 역	주 관	참 여 기 관								
각도	국립종자원	농진청·기술원·원종장								



VIII

보 고 사 항

항 목	보 고 명	시 한	보고기관
보고사항	주요농작물종자 원원종, 원종 종자생산 실적·계획 보고	실적 : 익년 1.05. 계획 : 익년 1.31.	○ 농촌진흥청 (기본식물) ○ 농업기술원 (원원종)
	주요농작물종자 보급종 공급 계획·실적 보고	계획 : 익년 1.31. 실적 : 익년 5.20.	○ 농산물원종장 (원 종) ○ 국립종자원 (보급종)

- 채종단계 :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
- 대상작물 : 벼, 콩, 옥수수, 감자, 팥, 녹두, 고구마, 참깨, 들깨, 땅콩
- 제반 보고는 국립종자원장에게 발송

(보고양식1)

주요농작물종자 채종단계별 생산(공급) 실적 보고

채종단계	작물명	품종명	생산(공급) 계획			생산(공급) 실적	비율	검사결과
			면적	종자량	목표량			
			a	kg	kg	kg	%	

- * 원원종·원종은 생산계획 및 실적, 보급종은 공급계획 및 실적을 입력
- * 검사결과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 사유 기재

(보고양식2)

작물별, 체종단계별 생산·공급계획 보고

<원원종 및 원종>

곡종별 품종별	생 산 계 획			해당도 종자확보 및 과부족			*확보방법 (대체희망품종)
	면 적	종자량	생산목표	확보량	소요량	과부족량	
	a	kg	kg	kg	kg	kg	

<보급종>

곡종별 품종별	생 산 · 공 급 계 획				해당도 종자확보 및 과부족			*확보방법 (대체희망품종)
	면 적	종자량	생산계획	공급계획	확보량	소요량	과부족량	
	ha	kg	톤	톤	kg	kg	kg	

- 주) 가. 종자 확보량은 생산단계의 상위단계 해당도 확보종자임
- 나. 과부족량은 해당 도 상위단계 확보량 대 소요량과의 차이임
- 다. 확보방법은 부족종자 확보계획으로 타도 잔량에 대한 전배 희망량이며, 타도에서 종자확보가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2~3개 품종을 희망 순서대로 명시
- 라. 원원종, 원종계획은 도(농업기술원), 보급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생산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마. 광역시(특별시 포함) 보급종 공급에 소요되는 원원종, 원종 생산은 광역시 승격 이전에 소속되었던 해당 도에서 생산
 - 서울·인천→경기, 세종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